

예원예술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정관과 본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교원(비전임 교원, 조교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2차 가해 포함)로서 관련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는 행위
 - 나. 성(性)·종교·장애·나이·국적·사회적 신분·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학업평가·고용·연구·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3.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중용, 권리구제의 고의적 지연이나 방해, 그밖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6.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7.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8.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9.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관련부서'는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학교 구성원'이란 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와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와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대학 내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권 관련 외부지원 사업
6. 인권 보장의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교류·협력
7.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독립성과 중립성)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된다.

제2장 조직

제5조(센터장)

- ①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센터장은 교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제6조(구성)

- ① 인권침해 행위(이하 '인권침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건의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 및 교육, 고충 민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둔다.
-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이하 '인권침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건의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 및 교육, 고충 민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 남,녀 각각 1명씩을 둔다.
- ③ 센터의 제반 활동지원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둔다.

제7조(업무)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인권침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관련 상담, 진정의 접수
 2. 인권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지도
 3. 매년 인권 실태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
 4. 인권 관련 외부기관이나 지역공동체와 교류·협력 및 지원

5.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요청
 6. 기타 성희롱·성폭력을 제외한 인권침해의 예방, 조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②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진정 접수와 상담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만,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업무는 교무과에서 담당하고,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교육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한다.
 7. 인권위원회에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요청
 8.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연계 체계 구축
 9. 성희롱·성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10.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전문교육 이수) 인권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권 및 성폭력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는 전문교육 이수를 지원해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제1절 인권위원회

제10조(설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위원회”를 둔다.

제11조(구성)

-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교학처장, 기획처장, 행정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학생위원2명이 상 직원대표 1명이상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인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센터 직원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센터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2.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3. 성평등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4.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인권침해와 성평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기타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9. 그밖에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회의)

- ①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인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조사위원회

제14조(설치)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 ① 센터장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학내·외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위촉하며,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반드시 여성위원을 1명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⑤ 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조사)

- ① 인권센터의 조사와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② 조사위원회와 조사담당자는 센터의 규정에 따른 조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와 조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결과와 보고) 조사위원회 또는 조사담당자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8조(상담 및 신고)

- ①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및 신고할 수 있다.
- ② 해당 사건의 상담 신청 및 신고는 '인권침해 사건 신고서'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요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인권센터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과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인권센터 이외의 교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권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진정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기산한다.
- ⑥ 이미 인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진정할 수 없다.
- ⑦ 제1항의 진정이 접수되면 센터장은 피진정인에게 진정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한다.

제19조(임시조치)

- ① 센터장은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긴급하게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공간분리,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3.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의 수업 및 업무 배제
 4. 그 밖에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안전,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인권위원회가 임시조치의 중지를 의결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개시 및 처리)

- ① 인권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인권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조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E-mail, 전자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인권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인권위원회는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신고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사건의 처리를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인권위원회는 신고의 처리 결과를 '인권침해 등' 신고처리결과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E-mail, 전자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인권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⑧ 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 등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해당 기관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라 조사 및 처리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상당과 조사의 분리)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상당과 조사를 분리하여 진행하며 각기 다른 사람이 담당하도록 한다.

제22조(조사의 방법)

- 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조정 및 중재) ① 센터장은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는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한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을 인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사건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피해자가 아닌 신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센터장은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아닌 신고인은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5조(신고의 각하)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21조 제5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등’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고를 철회한 후 동일한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5. 인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가 각하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전자 통신망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의 기각)

- ①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고인이 제23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 내 3회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인권위원회가 제1항의 신고를 기각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전자통신망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조치사항 등)

- ① 센터장은 인권위원회의 결정 또는 직권조사에 따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학생인 경우 대학의 교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피진정인에 대한 법령과 학칙·제 규정에 의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권고
 2. 관계부서의 장에게 공간분리나 그 밖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3. 관계부서의 장에게 제도·정책 및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4. 피해자의 요청을 참작하여 피진정인의 사과, 봉사, 재발방지 약속 등 요구
 5.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반성문 제출(피진정인의 임의적 의사에 의함), 인권침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그 밖에 피진정인이 반성할 수 있는 조치
- ② ‘인권침해 등’을 저지른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보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28조(징계요청)

- ① 인권위원회는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담당부서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인권위원회는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에게 보복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총장에게 가중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권위원회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자, 인권센터의 조사 활동 및 조치 행위의 이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징계의 의견을 첨부하여 징계담당부서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인권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인권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의결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권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한다.

1.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때
2. 그밖에 각하할 사유가 있는 때

④ 인권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한다.

1. 재심의하여도 최초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
2. 이의신청 자체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밖에 재심을 속행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 때

⑤ 인권위원회가 재심을 결정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조사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권위원회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척·기피·회피)

① 조사위원회 위원 또는 인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3.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5. 위원이 당사자가 소속된 학과나 부서의 구성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조사위원회 위원 또는 인권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와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 또는 인권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1조(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① 신고인 또는 피해자는 피해사실,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② 당사자는 인권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③ 제3자인 신고인, 피해자의 대리인 등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 ④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⑤ 신고인 또는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와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 및 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⑥ 인권위원회는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와 권고, 제31조에 따른 징계요청을 한 경우, 기타 인권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당사자는 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2차 피해의 방지)

- ① 누구든지 신고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에게 2차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 ② 센터장 및 인권위원회는 사건 처리 과정 중 신고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신변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 발생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의 교수권·근로권·학습권 등의 보호를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불이익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비밀유지)

- ① 인권위원, 조사위원 및 센터장을 포함한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및 그 대리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인권위원, 조사위원 및 센터장을 포함한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나 수행하였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재발방지조치 등)

- ①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 및 조사협력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인권침해 등’ 해당 사건은 인권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관련 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련 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7조(수당 등 경비) 인권센터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는 사건발생시 별도로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사건서류의 보관) 인권센터에서 진정을 접수하거나 처리한 사건의 서류는 해당 사건의 종료 후 10년간 보존한다.

제39조(교육 훈련의 지원 등)

① 인권센터는 소속 직원이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